

‘구매업무규정 제 1 장 제 6 조 구매 일반 원칙’ 중 사회적 구매의 원칙, 분쟁광물 사용 금지의 원칙

제6조 (구매 일반 원칙)

⑤ 사회적 구매의 원칙

구매부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 추진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증진 관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사회적 가치 증진 관점의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사회적 구매”라 하며, 이는 녹색구매, 사회적 기업 구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구매”라 함은 환경마크 인증,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 해외 환경마크 인증 등 국가인증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나 인증을 취득한 기업으로부터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원부자재 사용 절감, 제품/서비스 개발 시 환경영향 저감,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용수 사용량 저감, 폐기물 감축 등 친환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매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녹색구매로 포함될 수 있다.
2. “사회적 기업 구매”라 함은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의 존재 목적으로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인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분쟁광물 사용 금지의 원칙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분쟁광물의 구매 및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